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36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9. 20.
3. 회부연월일: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Ⅲ. 검토의견

□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하여, 행정상 강제 등 행정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의 제31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교원지위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반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u>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	
---	--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제9조),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처분권자는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조치(구제조치)를 하여야 함(제10조).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청 등”이라 함)은 이행기간을 정하여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구제명령)하여야 하고(제10조의3),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제10조의4).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은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 등이 처분권자의 구제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2021년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도입됨.¹⁾

1) 「교원지위법」(법률 제17952호) 제10조의4(이행강제금)
: (개정) 2021. 3. 23., (시행) 2021. 9. 24., (적용) 법 시행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부터 적용

한편,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별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여 국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됨.²⁾

「행정기본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개별법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 후인 2023년부터 시행됨.³⁾

이에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조문체계를 현행과 비교하면, ①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현행을 유지하되, 제3항은 자구를 수정하여 제2항으로 이동하고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함. ②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은 「행정기본법」에 유사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③ 제4항을 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2)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2021. 3. 23.,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제정) 2021. 3. 23., (시행) 2023. 3. 24., (적용) 법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표 1]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비교

구분	「교원지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비고
	현행	개정안		
이행 강제금 부과	(제1항) 부과·징수 주체, 요건, 부과대상, 금액상한 (금액 및 산정기준)	(제1항) 부과·징수 주체, 요건, 부과대상, 금액상한 (금액 및 산정기준)	(제1항) 부과 근거법 규정 사항 중 부과·징수 주체, 요건, 금액, 산정기준	· 현행 유지 - 「행정기본 법」에서 부과 근거 법이 정하 도록 규정
	(제3항) 산정기준, 반환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제2항) 산정기준, 반환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		· 현행 유지 - 위임 규정 · 차구 수정 · 조항 이동
부과 금액 가감	-	-	(제2항) 부과 금액 가감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	· 신규 적용
부과 통지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 통지 및 내용 : 액수, 사유, 기한, 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	<삭제>	(제3항)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문서 예고 * 이의제기 방법 등은 시행령 에서 규정 (제4항)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 통지 : 금액, 사유, 시기	· 「행정 기본법」 적용 - 내용 유사
연간 부과 횟수 및 상한	(제4항) 연간 부과 횟수 및 횟수의 상한	(제3항) 연간 부과 횟수 및 횟수의 상한	(제1항) 부과 근거법 규정 사항 중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 현행 유지 - 「행정기본 법」에서 부과 근거 법이 정하 도록 규정 · 조항 이동
「행정 기본법」 적용	<신설>	(제4항) 기타 사항 「행정 기본법」 제31조제2항~ 제6항 적용	-	· 「행정 기본법」 적용 - 부과 금액 가감 신규 적용

구분	「교원지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비고
	현행	개정안		
반복 부과	(제5항) 구제명령 이행 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및 기부과금 징수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제>	(제5항) 행정상 의무 이행 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금지 및 기부과금 징수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적용 -내용 유사
미납 시 징수절차	(제6항) 미납 시 징수절차 : 국세강제징수의 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제6항) 미납 시 징수절차 :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 함)」에 따라 징수한다.	· 「행정기본법」 적용 -내용 유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추가

주: 「교원지위법」 현행 및 개정안과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유사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기함

자료: 「교원지위법」 및 「행정기본법」 중 해당 조항 정리

① 현행이 유지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 등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제4항은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관할청 등이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들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에서 부과 근거법인 「교원지위법」이 정하도록 규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주체, 요건, 금액, 산정기준(제1항),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제4항)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제3항)한 것으로, 「교원지위법」에 별도로 규정할 특수성이 있어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② 삭제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과 내용이 유사하고, 제5항 구제명령 이행 후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금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과 유사하며, 제6항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징수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6항과 유사하므로, 「교원지위법」의 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 시 명시할 내용 중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제2항4)에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행정기본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사항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에서 확인이 가능함.⁵⁾

4) 「교원지위법」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5)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경고(戒告)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행정기본법 시행령」으로 적용될 경우, 해당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관할청 등 및 처분권자 모두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징수절차는 제6항에서 국세강제징수의 예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행정기본법」 적용 시 징수절차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정부과금법」에 따른 징수로 이원화됨.

두 가지 절차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여 독촉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에도(제10조)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제24조)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됨.⁶⁾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戒告)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채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채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채납기간 및 채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납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강제징수는 같은 법에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급하여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음에도(제8조)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제9조),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의 절차(제19조)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국세징수법」과 비교할 때 독촉장 발급 기한에 차이가 있음.⁷⁾

[표 2] 강제징수 관련 조항 비교

구분	「국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독촉	- 독촉장 발급: 지정납부기한이 <u>지난 후 10일 이내</u> (제10조제1항) * 납부기한: 독촉을 하는 날부터 <u>20일 이내</u>(제10조 제2항)	- 독촉장 발급: 지정납부기한이 <u>지난 날부터 50일 이내</u>(제8조제1항) * 납부기한: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u>20일 이내</u>(제8조제2항)
강제징수	독촉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재산의 <u>압류</u>, 압류재산의 <u>매각</u>·추심 및 <u>청산</u>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제24조)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재산 <u>압류</u>(제9조제1항) - 압류재산의 <u>매각</u> 및 <u>청산</u> 절차는 「국세징수법」 준용(제19조)

주: 「국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강제징수 관련 조항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유사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기함

자료: 「국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중 해당 조항 정리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교부청구·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7)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8조(독촉)

-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채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채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징수절차를 이행할 경우, 징수권자(관할청 등)가 교육부장관인 대학 교원, 유·초·중등교육 중 국립 학교 교원의 사안에는 「국세징수법」이 적용되고, 징수권자가 교육감인 유·초·중등교육 중 공립·사립학교 교원의 사안에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이 적용되므로,⁸⁾

유·초·중등교육 교원은 유사한 사안임에도, 국립학교와 공립·사립학교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국세징수법」,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을 적용받게 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적용법률 비교

구분		관할청 등 (징수권자)	적용법률	
			현행	개정안
대학	국·공·사립	교육부장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유·초·중등	국립	교육부장관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공·사립	교육감	「국세징수법」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

자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중 관련 내용 정리

또한 유·초·중등교육 중 공립·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징수절차의 적용법률 변경(「국세징수법」→「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으로 독촉장 발급기한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서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교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8)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행강제금 미납 시 징수절차를 현행 「교육지위법」 제10조의4제6항과 같이 국세강제징수의 예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을 신속히 보장하고 이행강제금을 효율적으로 징수·관리하고자 한 것이며,

징수권자 및 처분권자의 입장에서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의 절차·범위 등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은 통일적 기준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③ 개정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르도록 제4항을 개정함에 따라 신규로 적용되는 주요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감임.

해당 조항은 처분권자의 의무 불이행 동기, 목적, 결과,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 등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위임 등을 통하여 부과 금액이 가감되는 경우 및 정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과 금액을 가감하는 한편,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규모로 부과 금액이 가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처분권자의 의무 불이행 동기 등을 관할청 등이 특정하여 가감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부과 권한이 있는 관할청 등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감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불복 시 또 다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금액, 절차 등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적 지위에서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원지위법」상의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이므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기보다, 특별법적 지위에서 「교원지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행의 기속력·효율성,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9